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
2000 사회개발비		41,973,161	[국 10,303,436	도 9,507,741	기 22,070,674	균	0	분 91,310]
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		41,973,161	[국 10,303,436	도 9,507,741	기 22,070,674	균	0	분 91,310]
2210 보건·의료 기반조성		21,002,087	[국 6,775,239	도 2,858,288	기 11,352,250	균	0	분 16,310]
2211 보건·의료시설 확충		20,941,917	[국 6,775,239	도 2,817,678	기 11,349,000	균	0	분 0]
100 경상예산		144,368						
120 경상적경비		144,368						
201 일반운영비		60,808						
		60,808	01 일반운영비					
			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		=	40,808		
			지방의료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		=	20,000		
202 여비		83,560						
		83,560	01 국내여비					
			업무추진 기본여비		=	70,560		
			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		=	8,000		
			의약업소 및 공중보건 의사 지도		=	5,000		
200 사업예산		20,797,549	[국 6,775,239	도 2,673,310	기 11,349,000	균	0	분 0]
210 보조사업		19,818,049	[국 6,775,239	도 1,693,810	기 11,349,000	균	0	분 0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	306 출연금	2,149,000				
		2,149,000	00 출연금			
			지방의료원 등 시설장비보강(5개소)			= 2,149,000
			[국 0 도 0 기 2,149,000 균 0 분 0]			
	402 민간자본이전	9,200,000				
		9,200,000	01 민간자본보조			
			노인보건의료센터 건립(1개소)			= 2,200,000
			[국 0 도 0 기 2,200,000 균 0 분 0]			
			지역암센터 건립			= 7,000,000
			[국 0 도 0 기 7,000,000 균 0 분 0]		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8,469,049				
		8,469,049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
			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			= 8,469,049
			[국 6,775,239 도 1,693,810 기 0 균 0 분 0]			
220 자체사업		979,500				
	306 출연금	750,000				
		750,000	00 출연금			
			지방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			= 750,000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229,500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				
		229,5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				
			보건진료소 시설개선 = 202,500									
			보건진료소 재활장비지원 = 27,000									
2212	전문의료인력 양성	60,170	[국	0	도	40,610	기	3,250	균	0	분	16,310]
100	경상예산	49,420	[국	0	도	33,110	기	0	균	0	분	16,310]
110	인건비	16,800										
	101 인건비	16,800										
		16,800	08 기타직보수									
			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700,000원X2명X12월 = 16,800									
120	경상적경비	32,620	[국	0	도	16,310	기	0	균	0	분	16,310]
	201 일반운영비	32,620										
		32,620	01 일반운영비									
			공중보건 의사 직무교육(440명) = 27,000									
			[국	0	도	13,500	기	0	균	0	분	13,500]
			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교육 = 5,620									
			[국	0	도	2,810	기	0	균	0	분	2,810]
200	사업예산	10,750	[국	0	도	7,500	기	3,250	균	0	분	0]
210	보조사업	3,250	[국	0	도	0	기	3,250	균	0	분	0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3,250						
		3,25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
			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(5명)				=	3,250
			[국 0 도 0 기 3,250 균 0 분 0]					
220	자체사업	7,500		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7,500						
		7,5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
			재활전문요원 양성				=	7,500
2220	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	20,947,824	[국 3,528,197 도 6,626,203 기 10,718,424 균 0 분 75,000]					
2221	응급의료체계 구축	3,228,943	[국 2,542,917 도 661,526 기 24,500 균 0 분 0]					
	100 경상예산	7,000						
	120 경상적경비	7,000						
	307 민간이전	7,000						
		7,000	02 민간경상보조					
			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(응급의료센터)				=	7,000
200	사업예산	3,221,943	[국 2,542,917 도 654,526 기 24,500 균 0 분 0]					
210	보조사업	3,221,943	[국 2,542,917 도 654,526 기 24,500 균 0 분 0]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201 일반운영비	9,500						
		9,500	01 일반운영비					
			구조 및 응급처치교육	=	9,500			
			[국 4,750 도 4,750 기 0 균 0 분 0]					
	202 여비	3,000						
		3,000	01 국내여비					
			구조 및 응급처치교육	=	3,000			
			[국 1,500 도 1,500 기 0 균 0 분 0]					
	301 일반보상금	32,000						
		24,500	01 사회보장적수혜금					
			손상퇴원환자 표본병원 감시사업	=	4,500			
			[국 0 도 0 기 4,500 균 0 분 0]					
			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	=	20,000			
			[국 0 도 0 기 20,000 균 0 분 0]					
		7,500	10 행사실비보상금					
			구조 및 응급처치교육	=	7,500			
			[국 3,750 도 3,750 기 0 균 0 분 0]					
	307 민간이전	2,873,814						
		2,873,814	02 민간경상보조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
			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(8개소) [국 1,302,000 도 0 기 0 균 0 분]	=	1,302,000	0]	
			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지원(2개소) [국 575,907 도 575,907 기 0 균 0 분]	=	1,151,814	0]	
			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(인건비) [국 420,000 도 0 기 0 균 0 분]	=	420,000	0]	
	402 민간자본이전	303,629					
		303,629	01 민간자본보조				
			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(1개소) [국 160,110 도 68,619 기 0 균 0 분]	=	228,729	0]	
			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지원(시설장비) [국 74,900 도 0 기 0 균 0 분]	=	74,900	0]	
2222	균등한 의료기회 제공	7,892,092	[국 871,090 도 2,337,370 기 4,608,632 균 0 분]			75,000]	
	100 경상예산	174,300					
	120 경상적경비	174,300					
	201 일반운영비	500					
		500	01 일반운영비				
			보건소 노인치매 검진요원 교육	=	500		
	301 일반보상금	3,000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	
		3,000	01	사회보장적수혜금					
				장기기증자 활성화사업			=		3,000
	307 민간이전	170,800							
		160,800	02	민간경상보조					
				빛의전화 운영(장기기증본부)			=		10,800
				가족보건복지(인구보건복지협회)			=		120,000
				학생특수질환 의료비			=		30,000
		10,000	04	민간행사보조					
				모유수유아 선발대회			=		10,000
200 사업예산		7,717,792		[국 871,090 도 2,163,070 기 4,608,632 균 0 분 75,000]					
210 보조사업		6,886,093		[국 871,090 도 1,406,371 기 4,608,632 균 0 분 0]					
	301 일반보상금	4,000							
		4,000	01	사회보장적수혜금					
				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			=		4,000
				[국 2,000 도 2,000 기 0 균 0 분 0]	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6,565,593							
		6,565,593	01	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
				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			=		210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
			[국 0 도 0 기 210,000 균 0 분 0]				
			수돗물 불소농도 약품비 지원			=	8,500
			[국 0 도 3,500 기 5,000 균 0 분 0]				
			구강보건센터 운영비			=	26,000
			[국 0 도 6,000 기 20,000 균 0 분 0]				
			치아홈메우기 사업(10,800명)			=	105,300
			[국 0 도 24,300 기 81,000 균 0 분 0]				
			노인의치보철사업(464명)			=	465,205
			[국 0 도 107,355 기 357,850 균 0 분 0]				
			구강보건실 설치(특수학교운영비)			=	7,800
			[국 0 도 1,800 기 6,000 균 0 분 0]				
			알코올상담센터 운영(3개소)			=	193,700
			[국 0 도 44,700 기 149,000 균 0 분 0]				
			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(14개소)			=	578,500
			[국 0 도 133,500 기 445,000 균 0 분 0]				
			아동, 청소년정신보건사업			=	19,500
			[국 0 도 4,500 기 15,000 균 0 분 0]				
			신생아난청 조기진단			=	11,600
			[국 0 도 3,600 기 8,000 균 0 분 0]				
			임신부 산전관리비 지원			=	76,492
			[국 0 도 23,739 기 52,753 균 0 분 0]				
			불임부부지원			=	497,367
			[국 382,590 도 114,777 기 0 균 0 분 0]				
			산모, 신생아 도우미 지원			=	522,987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		[국 486,500	도 36,487	기 0	균 0	분 0]	
			암환자 의료비 지원					= 733,745
			[국 0	도 169,326	기 564,419	균 0	분 0]	
			암조기검진사업					= 1,078,078
			[국 0	도 248,787	기 829,291	균 0	분 0]	
			암예방관리사업					= 39,650
			[국 0	도 0	기 39,650	균 0	분 0]	
			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					= 1,991,169
			[국 0	도 459,500	기 1,531,669	균 0	분 0]	
	403							
	자치단체자본이전	316,500						
		172,5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	
			치과이동차량 지원(1개소)					= 97,500
			[국 0	도 22,500	기 75,000	균 0	분 0]	
			구강보건실 설치사업(4개소)					= 75,000
			[국 0	도 0	기 75,000	균 0	분 0]	
		144,0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형사업비					
			외국인근로자,노숙자 무료진료사업					= 144,000
			[국 0	도 0	기 144,000	균 0	분 0]	
220	자체사업	831,699	[국 0	도 756,699	기 0	균 0	분 75,000]	
	206							
	재료비	3,000						
		3,000	00 재료비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
			부설의원 운영 약품·재료 구입	= 3,000
	307 민간이전	45,000		
		45,000	05 민간위탁금	
			강원도 원격치매클리닉 운영	= 45,000
	308 자치단체등이전	633,699		
		633,699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
			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	= 200,000
			노인틀니시술 및 사후관리	= 22,500
			재가환자 간호사업	= 20,000
			갑상선질환 조기검진사업	= 60,000
			골다공증 검진사업	= 60,000
			전립선질환 검진사업	= 60,000
			노인치매 조기발견 검진	= 31,199
			출산장려시책 지원	
			출산육아용품 지원	= 135,000
			산전검진(초음파, 기형아)비 지원	= 36,000
			임산부 영양제 지원	= 9,000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50,000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		150,000	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			
			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지원			= 150,000
			[국 0 도 75,000 기 0 균 0 분 75,000]			
2223	주요질환중점관리와 건강증진	6,430,779	[국 0 도 2,385,019 기 4,045,760 균 0 분 0]			
100	경상예산	163,080	[국 0 도 155,790 기 7,290 균 0 분 0]			
110	인건비	14,580	[국 0 도 7,290 기 7,290 균 0 분 0]			
	101 인건비	14,580				
		14,580	10 일시사역인부임			
			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 지원			= 14,580
			[국 0 도 7,290 기 7,290 균 0 분 0]			
120	경상적경비	148,500				
	201 일반운영비	48,500				
		48,500	01 일반운영비			
			만성질환원격관리 운영			= 48,500
	307 민간이전	100,000				
		100,000	02 민간경상보조			
			건강한 음주문화 및 절주사업(보건협회)			= 10,000
			국민건강증진(건강관리협회)			= 90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				
	200 사업예산	6,157,899	[국	0	도	2,229,229	기	3,928,670	균	0	분	0]
	210 보조사업	5,165,099	[국	0	도	1,236,429	기	3,928,670	균	0	분	0]
	201 일반운영비	29,558										
		29,558	01 일반운영비									
			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= 20,000									
			[국	0	도	10,000	기	10,000	균	0	분	0]
			금연클리닉 운영 = 5,000									
			[국	0	도	2,500	기	2,500	균	0	분	0]
			보건소 방문보건사업 지자체지원 = 3,192									
			[국	0	도	1,596	기	1,596	균	0	분	0]
			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= 1,366									
			[국	0	도	683	기	683	균	0	분	0]
	202 여비	20,000										
		15,000	01 국내여비									
			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= 10,000									
			[국	0	도	5,000	기	5,000	균	0	분	0]
			금연클리닉 운영 = 5,000									
			[국	0	도	2,500	기	2,500	균	0	분	0]
		5,000	03 국외여비									
			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 = 5,000									
			[국	0	도	2,500	기	2,500	균	0	분	0]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
	307 민간이전	120,000					
		120,000	05 민간위탁금				
			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				= 120,000
			[국 0 도 60,000 기 60,000 균 0 분 0]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4,802,541					
		4,802,541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
			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				= 1,228,825
			[국 0 도 283,575 기 945,250 균 0 분 0]				
			금연클리닉 운영				= 976,262
			[국 0 도 225,291 기 750,971 균 0 분 0]				
			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				= 38,125
			[국 0 도 0 기 38,125 균 0 분 0]				
			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				= 107,120
			[국 0 도 24,720 기 82,400 균 0 분 0]				
			여성과어린이 건강증진				= 137,383
			[국 0 도 31,704 기 105,679 균 0 분 0]				
			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				= 18,605
			[국 0 도 5,774 기 12,831 균 0 분 0]				
			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				= 193,829
			[국 0 도 60,154 기 133,675 균 0 분 0]				
			보건소방문보건사업 지자체지원				= 1,428,718
			[국 0 도 329,704 기 1,099,014 균 0 분 0]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
			만성질환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 [국 0 도 0 기 24,606 균 0 분 0]			= 24,606	
			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홍보사업 [국 0 도 16,200 기 54,000 균 0 분 0]			= 70,200	
			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[국 0 도 100,728 기 223,840 균 0 분 0]			= 324,568	
			보건소 만성질환관리사업 지원 [국 0 도 15,000 기 50,000 균 0 분 0]			= 65,000	
			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[국 0 도 6,000 기 20,000 균 0 분 0]			= 26,000	
			한방지역보건사업 [국 0 도 0 기 45,000 균 0 분 0]			= 45,000	
			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 사업 [국 0 도 27,300 기 91,000 균 0 분 0]			= 118,300	
	403 자치단체자본이전	193,000					
		193,000	01 자치단체자본보조				
			한방사업 기능보강 [국 0 도 25,500 기 167,500 균 0 분 0]			= 193,000	
	220 자체사업	992,800					
	207 연구개발비	800,000					
		800,000	02 전산개발비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		만성질환원격관리시스템 확대구축 = 800,000					
	308 자치단체등이전	112,800						
		112,8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
			만성질환자원격관리 의사수당 = 36,000					
			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= 76,800					
	402 민간자본이전	80,000						
		80,000	01 민간자본보조					
			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장비 지원 = 80,000					
400	예비비등	109,800	[국 0 도 0 기 109,800 균 0 분 0]					
420	기타	109,800	[국 0 도 0 기 109,800 균 0 분 0]					
	703 교육비특별회계전 출금	109,800						
		109,800	0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					
			학교금연 및 흡연예방사업(교육청) = 109,800					
			[국 0 도 0 기 109,800 균 0 분 0]					
2224	전염성질환 관리체계 구축	3,396,010	[국 114,190 도 1,242,288 기 2,039,532 균 0 분 0]					
100	경상예산	141,200	[국 0 도 129,050 기 12,150 균 0 분 0]					
110	인건비	22,200	[국 0 도 10,050 기 12,150 균 0 분 0]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	101 인건비	22,200				
		2,400	08 기타직보수			
			예방접종이상반응 역학조사관 활동비 지원	200,000원X1명X12월	=	2,400
			[국 0 도 0 기 2,400	균 0 분 0]		
		19,800	10 일시사역인부임			
			비상방역약품 등 상하차인부임		=	300
			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		=	19,500
			[국 0 도 9,750 기 9,750	균 0 분 0]		
120	경상적경비	119,000				
	201 일반운영비	3,000				
		3,000	02 행사운영비			
			결핵퇴치행사 운영		=	3,000
	301 일반보상금	3,000				
		3,000	10 행사실비보상금			
			전염병 등 긴급대책회의 운영		=	3,000
	307 민간이전	113,000				
		113,000	02 민간경상보조			
			에이즈 예방교육 및 간병활동(에이즈예방협회강원도회)		=	60,000

과 목		예산액	예산출기초		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		
			결핵예방 및 퇴치사업(결핵협회)	=				40,000
			에이즈예방 홍보(에이즈퇴치연맹)	=				5,000
			한센병 행려환자 선도(한빛복지협회)	=				8,000
200	사업예산	3,254,810	[국 114,190 도 1,113,238 기 2,027,382 균 0 분 0]					
210	보조사업	2,812,762	[국 114,190 도 671,190 기 2,027,382 균 0 분 0]					
	201 일반운영비	31,878						
		31,878	01 일반운영비					
			전염병관리 전문가과정					
			실무자반 운영(1명)	=				1,000
			[국 500 도 500 기 0 균 0 분 0]					
			학교보건교사과정(50명)	=				11,500
			[국 11,500 도 0 기 0 균 0 분 0]					
			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	=				18,320
			[국 0 도 9,160 기 9,160 균 0 분 0]					
			감염질환 역학조사	=				1,058
			[국 1,058 도 0 기 0 균 0 분 0]					
	202 여비	10,780						
		10,780	01 국내여비					
			예방접종이상반응 역학조사	=				8,400
			[국 0 도 0 기 8,400 균 0 분 0]					

과 목		예 산 액	산	출	기	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		
			전염병관리 실무자반 운영 [국 100 도 100 기 0 균 0 분 0]			=	200	
			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[국 0 도 840 기 840 균 0 분 0]			=	1,680	
			감염질환 역학조사 [국 500 도 0 기 0 균 0 분 0]			=	500	
	301 일반보상금	95,660						
		95,660	01 사회보장적수혜금					
			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(9개소) [국 1,651 도 1,651 기 0 균 0 분 0]			=	3,302	
			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[국 5,700 도 5,700 기 0 균 0 분 0]			=	11,400	
			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 [국 0 도 38,879 기 38,879 균 0 분 0]			=	77,758	
			신종인플루엔자 대비 및 대응 [국 0 도 0 기 3,200 균 0 분 0]			=	3,200	
	308 자치단체등이전	2,662,564						
		2,662,564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			
			전염병관리 실무자반 운영지원(34명) [국 20,400 도 0 기 0 균 0 분 0]			=	20,400	
			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 [국 0 도 27,000 기 90,000 균 0 분 0]			=	117,000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	
			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[국 0 도 0 기 175,500 균 0 분 0]		=	175,500
			병의원 예방접종 지원 [국 0 도 368,507 기 1,228,356 균 0 분 0]		=	1,596,863
			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[국 0 도 9,204 기 30,679 균 0 분 0]		=	39,883
			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(75명) [국 55,678 도 55,678 기 0 균 0 분 0]		=	111,356
			한센 양로시설 지원(1개소) [국 17,103 도 17,103 기 0 균 0 분 0]		=	34,206
			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비 등 [국 0 도 130,928 기 436,428 균 0 분 0]		=	567,356
	402 민간자본이전	11,880				
		11,880	02 민간대행사업비			
			이중감시체계지원병원 운영지원 [국 0 도 5,280 기 5,280 균 0 분 0]		=	10,560
			감염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[국 0 도 660 기 660 균 0 분 0]		=	1,320
220 자체사업		442,048				
	206 재료비	95,000				
		95,000	00 재료비			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
				재해방역약품 구입(6종)	= 75,000
				재해예방접종약품 구입(백신 및 구급약품)	= 20,000
	307 민간이전	190,000			
		190,000	05 민간위탁금		
				한센병 예방치료관리	= 190,000
	308 자치단체등이전	104,000			
		104,000	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		
				결핵환자 3차진료비(영양제포함) 지원	= 16,500
				말라리아 방역사업	= 44,000
				결핵·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	= 31,500
				감염원조사 및 DNA지문검사 정보등록 관리	= 12,000
	402 민간자본이전	38,048			
		38,048	01 민간자본보조		
				한센병 전파방지를 위한 장비지원	= 38,048
	405 자산취득비	15,000			
		15,000	01 자산및물품취득비		
				백신보관용 냉장고(1대)	= 15,000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관,항,세항,세세항	목				
2230	선진 위생문화 정착	23,250			
2231	식품·공중 위생관리강화	23,250			
100	경상예산	19,250			
120	경상적경비	19,250			
	301 일반보상금	19,250			
		1,750	10 행사실비보상금		
			명예공중위생감시원 교육	=	1,750
		17,500	12 기타보상금		
			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	=	17,500
200	사업예산	4,000			
220	자체사업	4,000			
	206 재료비	4,000			
		4,000	00 재료비		
			식품등 검체구입	=	4,000

장:(5000)지원및기타경비 관:(5100)지방채상환

항:(5110)지방채상환

세항:(5111)지방채상환

[보건위생과] (단위: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산	출	기	초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	
5000 지원및기타경비		3,885,400				
5100 지방채상환		3,882,400				
5110 지방채상환		3,882,400				
5111 지방채상환		3,882,400				
300	채무상환	3,882,400				
310	지방채상환	3,882,400				
	311 차입금이자	202,400				
		202,400	01 시.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			
			[보건위생과]			
			의료장비 지원		=	202,400
	601 차입금원금	3,680,000				
		3,680,000	01 시.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			
			[보건위생과]			
			의료장비지원			
			조기 상환분		=	3,680,000
5300 교부금		3,000				
5310 징수교부금		3,000				

장:(5000)지원및기타경비 관:(5300)교부금

항:(5310)징수교부금

세항:(5311)징수교부금

[보건위생과] (단위:천원)

과 목		예 산 액	산 출 기 초		
장, 관, 항, 세항, 세세항	목				
	5311 징수교부금	3,000			
	400 예비비등	3,000			
	420 기타	3,000			
			308 자치단체등이전		
		3,000		02 징수교부금	
				[보건위생과]	
				향결핵제 보급수수료	10,000,000원X30% = 3,000
부 서 합 계		45,858,561			